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신 참여연대

(경유)

제목 신고에 대한 회신

---

사건번호 : 2015서경3442

사건명 :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노원방송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조사인 : (주)티브로드, (주)티브로드노원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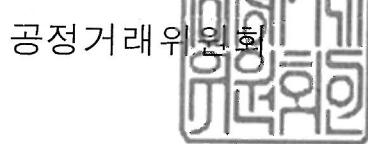
1.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신고내용 중 피조사인들이 동축케이블, 커넥터 등 일부 자재에 대해 규격을 지정하고 협력업체로 하여금 규격자재를 이용하도록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경우, 방송서비스 품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부 자재에 대해 규격을 지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고내용 중 피조사인들이 2013년경에 아날로그상품 유치수수료를 인하하고 디지털 상품 유치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유치수수료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경우, 디지털 방송전환 정책으로 인하여 방송시장에 변화가 발생하였던 점, 피조사인들이 유치수수료를 변경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이 금전상 손해로 보이는 가운데, 법률상 책임있는 손해의 존재와 그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규칙 제46조 제1호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신고내용 중 신규 가입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조사인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유치수수료를 환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우, 협력업체가 유치수수료를 얻기 위해 가입자들을 설득하여 기존 상품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단기 사용 후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소명하고 있어 협력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신고내용 중 피조사인들이 업무량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으로서 매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상생지원금을 2014년 경에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철거 수수료와 A/S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업무량에 연동시켰다는 내용의 경우, 피조사인들이 상생지원금을 매년 고정된 금액으로서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규칙 제46조 제4호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신고내용 중 피조사인들이 2014년경에 기본수수료의 구성과 산정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여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정된 금원이었던 기본수수료가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금원이 되었다는 내용의 경우, 가입자 유치실적이 우수한 협력업체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기본수수료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본수수료의 변경으로 인해 협력업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이 금전상 손해로 보이는 가운데, 법률상 책임있는 손해의 존재와 그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규칙 제46조 제1호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신고내용 중 피조사인들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점에도 영업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협력업체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영업 권한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경우, 협력업체에게 특정 지역에 관한 독점적인 영업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분할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특정 지역에서의 독점권을 보장해주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지역제한 규제취지와 상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 신고내용 중 피조사인들이 2014년 경에 협력업체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상호 협의하에 다른 업체로 이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경우, 협력업체가 피조사인들에게 먼저 위탁업무 수행이 어려워 위탁업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적도 있어 해당 내용이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신고내용 중 피조사인들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경우, 계약서 상 피조사인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열거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비로소 피조사인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해지 사유를 나열하고 나열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9. 신고내용 중 협력업체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피조사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우 각각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인 점, 신고내용 중 피조사인들이 협력업체로 하여금 수수료 송금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우 수수료 송금 관련 비용이 피조사인들이 협력업체에 수수료를 송금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가 피조사인들에게 수수료를 반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각각 규칙 제46조 제1호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 종료'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신고내용 중 협력업체가 고객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협력업체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우, 협력업체의 행위에 대해 협력업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내용이므로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보기 곤란하고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신고내용 중 피조사인들이 협력업체에게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피조사인들은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우, 협력업체가 지급해야 할 부분만큼을 상계한다는 내용이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보기 곤란하고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신고내용 중 협력업체가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에 피조사인들이 협력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우, 협력업체가 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그 반대급부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보기 곤란하고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신고내용 중 피조사인들과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이 협력업체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우, 우리 위원회는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 해석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소관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며, 신고내용 중 피조사인들이 2014.2.1.~2016.1.31. 협력업체를 상대평가하여 하위 20%에 해당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경우, 피조사인들이 협력업체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사무관	기안	과장	전결 2018.05.29
	김주연		박기홍

협조자

시행 (사건처리)경쟁과-989

접수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중앙동) / <http://www.ftc.go.kr>

전화번호 02-2110-6117 팩스번호 02-2110-0652 / [juyeonkim@korea.kr](mailto:juyeonkim@korea.kr) / 비공개(7)